

서울대학교 2021년
통일·평화기반구축사업 신청 요강

2020. 12.

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서울대학교는 정부 및 사회의 주된 관심의 하나인 통일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역량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적 과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‘통일·평화역량 기반구축사업(이하 통일·평화기반구축사업)’을 추진함

□ 기본방침

- 학내 각 연구 단위 및 교수로부터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심사 후 지원
 -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
 - 서울대학교 내의 연구소(원·센터) 및 교수 개인/공동이 지원대상
 - ※ 그전까지는 연구소를 통해서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, 2021년부터 연구소를 통한 신청과 더불어, 교수 개인/공동의 개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및 지원 대상 확대
 - ※ 단, 개인 신청 시에도 선정 이후 연구비 예산집행기관 지정 필수
 - 사업 신청은 해당 기관 또는 교수가 속해 있는 대학(원)을 통해 신청
 - 사업 선정 이후 △‘2021 서울대학교 통일·평화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’ 참석과 공개발표 △사업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△성과자율지표 제출을 의무로 함
- 통일학 및 평화학의 공동 인프라 구축 필요성, 중장기적 연구의 필요성, 학제적 연구 진작, 저변 확대를 위한 신규 연구 인큐베이팅, 국제협력연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 예산의 30% 내외에서 기획과제 발주

□ 사업기간

- 사업기간: 11개월 (2021.3.2. ~ 2022.1.31.)

2. 추진방안

□ 지원예산

- 총예산: 10억 내외
- 공모사업 예산: 7억 내외
- 지원 규모
 - A형: 단위사업 당 5천만원 이내
 - B형: 단위사업 당 3천만원 이내
 - C형: 소규모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 산정
 - ※ 전체 사업비 규모가 2020년과 동일하다는 전제임. 만일 총사업비 규모가 변경될 경우, 부득이 선정 규모 조정

□ 지원분야

- 통일, 평화와 관련된 학술 연구
- 남북 교류 협력 및 통합에 관한 사업
- 기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관련 분야 연구 사업
 - * 학제간 사업 지원 장려
 - * 이전 사업에 신청한 적이 없는 기관, 교수 개인/공동 참여를 장려함

□ 선정대상 의무 사항

- 통일·평화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 참여
 - 선정대상은 2021년 10월 말 예정인 '2021 서울대학교 통일·평화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'에 참석하여 진행된 사업내용 및 잠정적 연구결과를 공개발표
 - ※ '통일·평화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' 발표는 사업책임자가 맡는 것이 원칙
- 사업결과보고 제출
 - 선정대상은 사업 종료 전까지 「사업결과보고서」(2022.1.15, 홈페이지 탑재용)과 「사업결과보고서 요약본」, 「사업 성과물」(2022.1.31)을 통일평화연구원에 제출
 - 사업결과보고서: 선정대상이 수행한 사업결과 및 연구성과를 중심으로

자율적으로 작성 후, 출력본(1부) 및 파일을 통일평화연구원에 제출

- * 규격 및 분량: 한글 50페이지 내외
- * 형식: 자유 형식 (별도 양식 없음)
- * 제출 마감: 2022년 1월 15일 이전

*** 사업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공개(열람 및 다운)될 예정**

- **사업결과보고서 요약본:** 선정대상이 수행한 사업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해진 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, 통일평화연구원에 제출
 - * 규격 및 분량: 한글 10페이지 내외
 - * 형식: 추후 별도 양식 제공
 - * 제출 마감: 2022년 1월 31일 이전
 - **사업 성과물 목록:** 사업을 통해 생성된 다양한 결과물에 대한 리스트를 정해진 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, 해당 원본 파일과 함께 통일평화연구원에 제출
 - * 형식: 추후 별도 양식 제공
 - * 제출 마감: 2022년 1월 31일 이전
- * 최종 연구결과물은 각 기관 및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**

○ 성과자율지표 제시

- **사업계획서 제출 시** 각 기관과 개인은 해당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출 가능한 사업 결과물을 제시
 - * 예: 해당 사업이 학술 연구를 지향하는 경우 사업 시작일(2021.3.2) 기준 2년 이내 사사표기 된 논문 또는 단행본 게재 또는 게재 예정 00건
 - * 예: 그 외 사업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사사표기 된 언론 홍보 00건 혹은 DB 자료 00건 등을 통일평화연구원에 제출
- 성과지표 형식 및 내용은 각 기관 또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
-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시 '성과자율지표' 달성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

○ 사업성과에 대한 사사표기

- 통일·평화기반구축사업으로 파생된 연구 또는 사업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사사표기 해야 함
 - * 해당 사업성과는 통일평화연구원 사업성과로도 집계되어 대학 본부에 보고될 예정
 - * 자세한 사항은 선정기관 대상 추후 공고

3. 사업신청 및 제출

□ 신청대상

○ 본교에 소속된 연구소(원·센터) 또는 교수(개인 또는 공동)가 신청 대상

- 학내 연구소(원·센터) 외 외부 기관/인원도 사업 참여는 가능하나 신청 주체는 될 수 없음

□ 신청유형

○ A형(5천만원 이내)

○ B형(3천만원 이내)

○ C형(자율 소형)

- 사업내용, 기간,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신청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
- 각 유형별 선정 개수는 최종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
- 사업 신청 시 소요 예산액을 각 유형별로 자유롭게 기입 가능하나 최종 지원액은 조정 가능
 - * A형, B형, C형 모두 사업의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나 외부 기관과의 협력 형태(예산 분담 등)를 구체적으로 명시

□ 사업 참여인력

○ 사업책임자

- 사업책임자는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학과(부), 전공, 대학원, 연구소(원·센터) 소속으로 사업 종료까지 재직이 보장되어야 함
 - * 사업책임자가 사업기간 내에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통일 평화연구원에 사유서 제출 또는 별도 설명 필요
 - * 1인이 복수의 통일·평화기반구축사업 사업책임자가 될 수 없음
 - ※ 2021년부터 교수가 개인/공동으로 신청 가능 (단, 사업 선정 이후 연구비 예산집행기관 지정 필수)
 - ※ '통일·평화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' 발표는 사업책임자가 맡는 것이 원칙

○ 주요 참여인력

- 주요 참여인력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의미하며 타 대학 /기관 교수 및 연구자, 대학원생도 참여 가능(해외 대학/기관 포함)
- * 1인이 2개의 통일·평화기반구축사업의 주요 참여인력으로 소속되는 것은 가능하나 3개 이상은 불가

□ 신청서류

○ 사업계획서

- [서식 1] 「서울대학교 2021년 통일·평화기반구축사업 계획서」 작성
 - * 별도 양식: 한글, A4 용지 10페이지 내외
- 사업 계획서의 예산 편성 및 재정 집행 기준은 [붙임 1] 「통일·평화기반구축사업 사업비 집행 기본원칙(2020.12)」 참고
- 단일 연구소(원·센터)가 복수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사업 계획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사업책임자는 달라야 함

□ 신청방법

- 사업책임자는 사업 계획서 작성 후 소속 대학(원)에 제출
- 소속 대학(원)이 취합된 「서울대학교 2021년 통일·평화기반구축사업 계획서」를 소속 대학(원)장 명의 공문으로 통일평화연구원 제출
 - 소속 대학(원)이 복수 기관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전체를 취합하여 대학(원)장 명의 공문으로 통일평화연구원에 제출
 - * 본교 본부주관연구소의 경우 기관장 명의 공문으로 제출 가능
 - 파일이름: 신청기관명 또는 개인명_2021년 통일·평화기반구축사업 계획서.hwp
- 관련 문의: 이경수 선임연구원, 김민지 연구원
 - 전화: 031-5176-2352
 - 이메일: 김민지 연구원(kjkl3@snu.ac.kr)

□ 신청 기한: 2021년 1월 28일(목) 18:00까지

4. 사업선정 및 일정

□ 사업선정

○ 선정 방법

- 서울대학교 ‘통일·평화기반구축사업 평가위원회’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선정

○ 평가기준

항 목	심 사 기 준
1. 사업 필요성	사업 필요성이 높은 정도, 사업주제의 구체성 정도
2. 사업 구성 및 예산 적절성	사업내용 및 규모와 소요 예산의 부합성 정도, 사업 구성 및 사업책임자의 실질적 역할 정도, 예산 계획의 적절성 정도
3. 잠재적 파급효과 및 공헌 가능성	사업결과가 관련 분야에 미칠 영향력 기대 정도, 사업결과의 예상활용 정도 및 역량 축적 가능성
4. 기존 사업 평가 또는 창의성 평가	선정 경력 기관 및 신청자: 다년간 사업 실적 및 사업결과 등 고려
	신규 신청 기관 및 신청자: 창의성 and/or 실현 가능성 정도

○ 평가방식

- 평가위원회 별도 심사와 운영위원회 의결
- 평가위원: 본교 전임교원 중 10인 내외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심사
 - * 평가위원은 전공별 영역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평가위원 인원 수는 검토 대상 사업 계획서의 개수와 영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검토 대상 자료
 - * 신규 신청기관 및 사업책임자: 2021년 통일·평화기반구축사업 계획서
 - * 기 지원받은 신청기관 및 사업책임자: 2021년 통일·평화기반구축사업 계획서, 이전 사업결과 및 관련 실적(사업연도 전체)
- 평가절차: 한 기관/개인의 사업 계획서는 최소 2인의 평가위원이 평가 기준표를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, 그 결과를 ‘통일·평화기반구축사업 운영위원회’에 통보하고 최종 지원기관/개인 및 지원액 결정

□ 향후일정

○ 신청 및 선정 일정

- 신청공모 안내: 2020.12.30 (수) (단과대별 공문 및 교수 개인별 사업 신청안내 메일 발송)
- 사업 계획서 접수 마감: 2021.1.28 (목) 18:00까지
- 사업 선정 통보 : 2021.2.19 (금)
- (실제) 실행예산 접수 마감: 2021.2.25 (목)
- 최종 배정공문 발송, 예산 재배정, 사업책임자 전체회의: 2021.3.10 이전

※ 기획과제들은 공모사업 선정 후 3월 중 발주 예정

○ 사업 주요 일정

- 2021 통일·평화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: 2021.10월 말(예정)
(장소: 서울대 시흥캠퍼스 또는 zoom 화상회의)
- 사업결과보고서 제출: 2022.1.15 (홈페이지 탑재용)
- 사업결과보고서 요약본, 사업 성과물 제출: 2022.1.31
- 2021 통일·평화기반구축사업 종료: 2022.1.31

※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

[서식 1]

서울대학교 2021년 통일·평화기반구축사업 계획서

기관명 또는 개인명	사업명	유형 (A,B,C)	소요액 (백만원)
(개인 신청 시 선정 후) 연구비 집행기관명			

작성요령

- 기관명 또는 개인명: 서울대학교 내의 연구소(원·센터) 이름 또는 사업책임 교수 개인 이름을 기입
 - 교수 개인 신청시 연구비 집행기관명을 ‘기관명 또는 개인명’ 하단에 기입
 - 유형: A형(50백만 이내), B형(30백만원 이내), C형(소형 자율) 중 표기
 - 소요액: 사업 규모와 성격(A형 50백만원 이내, B형 30백만원 이내, C형 소형 자율)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기입 가능하나 최종 지원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
- ※ 각 유형별로 적합한 사업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1. 사업목적 (14p, 진하게)

- 13p, 진하게
- 13p, 보통
- 12p, 보통

2. 기대효과

- 13p, 진하게
- 13p, 보통
- 12p, 보통

3. 사업내용 (※ 추진방법 및 절차 등 기재)

13p, 진하게

- 13p, 보통
- 12p, 보통

4. 예상 성과 결과물 (14p, 진하게)

13p, 진하게

- 13p, 보통
- 12p, 연하게

작성요령

- 사업 종료 시 예상되는 결과물 형태에 대해 기술
(예: 논문 or 단행본 or 관련 분야 DB or 자료집 등)
- 예상되는 성과 결과물의 형식 및 내용은 기관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사업 종료 시 '성과자율지표'로 통일평화연구원에 제출

5. 사업참여인력 (14p, 진하게)

사업책임자 13p, 진하게

성명	대학	학과	직급
12p, 보통			
연구소(원·센터)	구내전화	휴대전화	이메일

주요 참여인력 13p, 진하게

성명	소속 (대학/(단과대)/학과)	직급	이메일
12p, 보통	(예: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부)		
	(예: 연세대 수학과)		

작성요령

- 사업책임자는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학과(부), 전공, 대학원, 연구소(원·센터) 소속으로 사업 종료까지 재직이 보장되어야 함
- 사업책임자가 사업기간 내에 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통일평화연구원에 사유서 제출 또는 별도 설명
- 주요 참여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의미하며, 국내외 타 대학/기관의 교수/연구원, 대학원생도 참여 가능 (단, 참여 교수의 실질적 역할이 중요함)
- 1인이 복수의 통일·평화기반구축사업 사업책임자가 될 수 없음

6. 소요예산

(단위: 원)

세목	신청액	산출근거
12p, 보통	12p, 보통	○ 12p, 보통 ○
		○ ○
		○ ○
계		

작성요령

- [붙임 1] 「통일·평화기반구축사업 사업비 집행 기본원칙(2020.12)」을 참고할 것
- 교내 교원(전임/비전임) 경우 집필료, 강사료, 기타 자문료 등 인건비성 경비 형태로 1인당 300만원 이상 지급 불가
- 사업비를 사업 수행 본연의 소요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관 인력이나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을 지양해 인건비성 경비 지급은 총 사업비의 50% 미만이어야 함
-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필수 연구/사업 보조인력이 아닌 기관 운영 차원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 계상 불가
- PC 등 기자재 및 비소모성 비품비 지출은 지양

7. 붙임

- 기관 인력 현황
- 기관운영 재원 규모 및 현황
- 기관 주요사업

※ 교수 개인의 개별 신청 경우

- 개인이 사업책임자로 참여한 주요사업 (끝)